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의안 번호	2995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지방공무원법」(2022. 1. 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의 목적을 밝힘(안 제1조).

나. 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